

의안번호	2218276
의 퇴 인	김은혜 의원
회 답 일	2026.4.23.
추계번호	26F19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재산세 경감 기한 제한 삭제 및 2027년 재산세 면제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항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 경감의 기간 제한을 삭제하는 경우, 2027년 239.0억원, 2028년 97.6억원, 2029년 108.6억원, 2030년 119.6억원, 2031년 130.6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총 695.4억원(연평균 139.1억원)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 단서에 따라 2027년 1개년도에 대해 항공기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는 2027년 239.0억원 등 총 239.0억원(연평균 47.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 본문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의 50%가 경감되는 효과는 2028년 97.6억원, 2029년 108.6억원, 2030년 119.6억원, 2031년 130.6억원 등 5년간 총 456.4억원(연평균 9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1년, 재산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안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239.0	-97.6	-108.6	-119.6	-130.6	-695.4	-139.1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항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 경감 - (현행)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 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 산세 50% 경감 - (개정안) 과세기준일 현재 항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를 기간의 제한이 없이 50% 경감 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재산세 면제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개정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 가정하고, 세입효과는 2027년에서 2031년까지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세입효과 분석은 ①개정안 본문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경감 효과가 2028 년~2031년까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②개정안 단서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효과는 2027년 단일연도에 대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그 효 과를 나누어서 추계

[표 2] 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제65조 본문	제65조 단서	제65조 본문	제65조 단서
	자산총액 기준			
	5조원 미만 (LCC ¹⁾)	5조원 이상 (FSC ²⁾)		
취득세	1.2%p 경감(세율) － 일몰 기한: 2027.12.31.			
재산세	－ 경감률: 50% － 경감 기간: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 일몰 기한: 2027.12.31.		－ 경감률: 50% 경감 － 경감 기간: 제한 없음	－ 경감률: 100% 면제 － 경감 기간: 2027.12.31. 까지 부과되는 재산세

주: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41호) 제65조³⁾에서는 자산총액 일정기준 이상인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하지 않아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본문과 단서에 따른 재산세 경감 여부가 달리 규정되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2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일정기준 이상인 항공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재산세 경감이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어 현행법에 따른 본문과 단서의 재산세 경감률 및 면제 기간이 동일해짐
 2. 2025년 기준, 국내항공사업자 중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항공사업자는 2개, 5조원 미만인 항공사업자는 10개임(자료: 국토교통부)

3. 재정수반 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안 제65조 본문) 재산세 경감 기간 제한 삭제

1) 추계방법

□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가 경감됨

○ (현행)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50% 경감

→ (개정안)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재

1) LCC(Low-Cost Carrier), 저비용 항공사

2) FSC(Full Service Carrier), 기내식, 수하물 등 모든 서비스를 운임에 포함하는 대형 항공사

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41호)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산세 50% 경감

-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세입감소의 효과는, 개정안에 따라 매년 항공기 재산세 과세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입이 감소하는 효과에서 현행법에 따른 감면예상액을 뺀 금액으로 추계됨
- 현행법에 따른 최근 3개년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은 연평균 55.1억원 수준임

[표 3]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평균
세액	61.7	49.7	53.9	55.1
건수	173	149	162	161.33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 이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한 것으로, 일몰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매 회계연도마다 1개년도 동안 새롭게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n년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재산세 50%가 경감되는 항공기는 (n-5)년도 6월 2일에서 n년도 6월 1일까지 5년 사이에 취득하여 등록된 항공기임
 - 따라서 연평균 실적(55.1억원)을 5개년으로 나누는 경우, 1개년에 취득한 항공기에 대해 감면되는 재산세 실적은 11.0억원으로 볼 수 있으며, 현행법이 일몰되는 경우 새롭게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효과는 연도별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 n년도 6.1.에 현행법에 따라 경감되는 재산세 실적은 아래의 합으로 볼 수 있음
 - * (n-5)년 6월 2일~(n-5)년 12월 31일 취득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경감: 5.5억원
 - * (n-4)년 1월 1일~(n-4)년 12월 31일 취득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경감: 11억원
 - * (n-3)년 1월 1일~(n-2)년 12월 31일 취득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경감: 11억원
 - * (n-2)년 1월 1일~(n-1)년 12월 31일 취득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경감: 11억원
 - * (n)년 1월 1일~(n)년 6월 1일 취득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경감: 5.5억원

[표 4] 현행법에 따른 예상 재산세 감면액: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49.5	-38.5	-27.5	-16.5	-5.5

주: 2032년 재산세의 경우, 전체 회계연도가 아닌 2027.6.2.~2027.12.31.까지 6개월 동안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만 현행법에 따라 감면된 점을 고려

-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매년 항공기 재산세 과세분의 50%에 대해 세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3개년(2022~2024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분 실적은 연평균 294.1억원 수준임

[표 5] 최근 3개년도 재산세 과세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평균
재산세	287.1	295.2	300.2	294.1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세입감소의 효과는 연평균 재산세 과세분의 50%(147.1억원)에서 [표 4]에 따른 금액을 뺀 값으로 추계할 수 있음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의 50%가 경감되는 효과는 2028년 97.6억원, 2029년 108.6억원, 2030년 119.6억원, 2031년 130.6억원 등 5년간 총 456.4억원(연평균 9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6] 개정안 본문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1년, 재산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안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97.6	-108.6	-119.6	-130.6	-456.4	-91.3

(2) (안 제65조 단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가 면제되는 효과

1) 추계방법

- 개정안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7.1.1.로 가정하는 경우, 개정안 단서에 따라 항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2027년 1년간 면제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라 2027년 재산세가 100% 면제되어 재정수입 감소가 새롭게 야기되는 효과는, 최근 3개년 항공기 재산세 과세분 연평균 실적에서 현행법 제65조에 따른 항공기 재산세 감면실적을 뺀 금액임
- 최근 3개년(2022~2024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분 실적은 연평균 294.1억원임
 - 자산총액 일정기준 이상(5조원) 항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도가 2022년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3개년도 실적을 사용

[표 7] 최근 3개년도 재산세 과세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평균
재산세	287.1	295.2	300.2	294.1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 현행법 제65조에 따라 재산세 50%가 감면된 실적은 연평균 55.1억원임

[표 8]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평균
세액	61.7	49.7	53.9	55.1
건수	173	149	162	161.33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2027년 세입감소의 효과는 연평균 재산세 과세분 실적(294.1억원)에서 현행법에 따른 연평균 항공기 재산세 감면 실적을 뺀 값으로 추계할 수 있음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개년도에 대해 항공기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는 2027년 239.0억원 등 5년간 총 239.0억원(연평균 47.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9] 개정안 단서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1년, 재산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안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239.0	-	-	-	-	-239.0	-47.8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김주현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주현	02-6788-4836	kjh@assembly.go.kr